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01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이연희·임미애·이기헌

임광현 · 김한규 · 박홍배

홍기원 · 허종식 · 김남희

손명수 · 복기왕 · 한민수

김정호・황 희・윤후덕

이정문 • 한준호 • 민형배

윤종군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

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 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 여성"을 각 "경력보유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육아 및 자녀교육"을 "육아·자녀교육 및 가족 돌봄 등"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

30조의4제1항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u>경력단절 여성</u> 고용	제29조의3(<u>경력보유여성</u> 고용 기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	
의8 및 제30조에서 " <u>경력단절</u>	<u></u> 경력보유여성
<u>여성</u> "이라 한다)과 2022년 12	
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	
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u>경력단절</u>	<u>경력보유여성</u>
<u>여성</u> 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u>.</u>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	
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경력</u>	<u>경력</u>

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 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 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 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 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u> 모휴여성</u>
육아·자녀교육 및 가족
<u>돌봄 등</u>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01 F 10000
<u>2030년 12</u>
<u>월 31일</u>

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 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 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 2. (생략)
- ② ~ ⑧ (생 략)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u>경력단절 여성</u>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1
<u></u> 경력보유여성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u></u> 경력보유
<u>여성</u>

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 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 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 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 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 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 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 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 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 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 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② ~ ⑦ (생 략)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② ~ ⑦ (현행과 같음)
8
<u>경력보유여성</u>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	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	지의 소	녹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	소득세명	만 해
당한다) 또는	는 법인/	세에서	공제
한다.			

- 1. 청년 및 <u>경력단절 여성</u>(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 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 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 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 분의 100
- 2. (생략)
- ② ~ ⑥ (생 략)

<u>.</u>
1 <u>경력보유여성</u>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